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4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1.12. 17
제출자 : 김완규의원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1년 12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
-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0년 12월 21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

5. 운 영 계 획

| 일 시 | 차 수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---|
| 12.21(금) | 제1차조례 (10:00) | 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.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.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.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.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.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.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| |